청문회 절차 요약

청문회가 **대면 청문회**인 경우, 당사자들은 예정된 청문회 시간 적어도 15분 전에 행정법원청 14 층에 있는 청문회장에 있는 접수원에게 체크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정된 청문회실로 안내받게 됩니다.

청문회가 전화 청문회인 경우, 당사자들은 예정된 청문회 시간 적어도 15분 전에 청문회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장소에 집합해야 합니다. 귀하가 전화 청문회를 거부하고 대면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날짜 전에 미리 귀하의 요청에 대해 행정법판사("ALJ")에게 통보하십시오. 귀하의 요청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보내십시오.

청문회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귀하가 행정법판사(ALJ)가 귀하의 서류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의 사본을 청문회 전에 미리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본 1 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십시오. 귀하는 청문회 후에 귀하가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서류들의 원본이 아니라 판독할 수 있는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증거로서 인정된 서류들은 전체 상소 과정 동안 사건 파일에 유지되어야합니다.

귀하가 증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귀하의 증인이 청문회실 밖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며, 전화로 증인 증언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 요청에 대해 행정법판사(ALJ)에게 청문회 날짜 전에 미리통보하십시오. 귀하의 요청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보내십시오.

행정법판사(ALJ)는 한 당사자에게, 보통 카운티 또는 주 부서에게 증거를 먼저 제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증인들에게 전화하여 해당 당사자가 믿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증거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행정법판사(ALJ)에게 이전에 행정법판사(ALJ)와 상대방에게 제시한적이 없는 증거 서류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마치면,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증인(당사자 포함)은 행정법판사(ALJ)에 의해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서, 당사자들이 유일한 증인일 수 있습니다. 증인은 먼저 증인을 부른 당사자에 의해 먼저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 상대방에 의해 교차 심문을 받게 됩니다. 교차 심문은 해당 증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차 심문관은 진술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법판사(ALJ) 또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colorado.gov/dpa/oac)에 있는 청문회 및 소송 기록 - 절차에 접속한 후 비변호사 가이드와 일반 절차 링크를 따라 가십시오. 또한 귀하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대리인 규칙에 대한 링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청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e Service Building 1525 Sherman Street, 4th Floor Denver, Colorado 80203. 전화 번호는 (303) 866-2000 이고 팩스 번호는 (303) 866-5909 입니다.